

제2026-39호 2026년 5월 12일(화)	시  보 여수시	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38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여수시 죽림1지구 A5블록)
- 여수시 고시 제2026-1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41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이파트 신축공사)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87호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495호 전기사업 양수양도 공고 - 주식회사 다운스틸 태양광발전소
- 여수시 공고 제2026-1505호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515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행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521호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용자) 사업 모집 공고(3차)
- 여수시 공고 제2026-1523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군내리 511번지]

읍·면·동

-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26-25호 2026년 돌산읍 해수욕장 주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중부민원출장소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고시 제2026-15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6-1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사업내용
	주 소	성 명				
2024-78 ('24. 12. 27.)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정면 상화리 133-4번지 일원	1,122㎡	2026.5.7.	화정면 상화도 방파제 연장공사

2026. 5. 7.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사업내용
	주 소	성 명				
2024-54 ('24. 9. 11.)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정면 하화리 294-5번지 일원	628㎡	2026.5.7.	화정면 하화도 방파제 연장공사

2026. 5. 7.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6 - 1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고시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인 자	
					성 명	주 소
2026-11 (‘26. 5. 7.)	여수시 여자리 197-8번지 지선 공유수면	부잔교 설치	1,819	‘26. 5. 7. ~ ’56. 5. 6.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시청로 1

2026. 5. 7.

여 수 시 장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여수시 죽림1지구 A5블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11.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죽림1지구 A5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 케이원제28호죽림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도병운
3. 사업위치 : 여수시 죽림1지구 A5블록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31,228.10㎡
 - 나. 건축면적 : 4,880.5354㎡
 - 다. 연 면 적 : 93,983.7372㎡
 - 라. 규 모 :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개동
5. 사업기간 : 2025. 12. 1. ~ 2028. 8. 31.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과(☎659-4095)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6 - 1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일	시 행 자		공사기간	점용·사용 장 소	사업내용
		주 소	성 명			
2026-11 ('26. 5. 7.)	'26. 5. 11.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26. 5. 7. ~ '26. 8. 7.	화정면 여자리 197-8번지 일원	부잔교 설치공사

2026. 5. 11.

여 수 시 장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6차) 고시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외 32필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6차)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6차) 사항

1. 사 업 명 : 여수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민곤 외 1개사
3. 사업위치 :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외 32필지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65,051.50m²
 - 나. 건축면적 : 12,658.09m²
 - 다. 연 면 적 : 230,881.65m²
 - 라. 규 모 :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365세대
5. 사업기간 : 2022. 6. 30. ~ 2027. 5. 14.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모집·선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여 수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 나. 시행기관 : 여수시 관광과
- 다. 운영기간 : 2026. 7. 1. ~ 2028. 6. 30. 예정 (2년)
- 라. 대상시설

시설명	재산의 소재지	규 모		용 도	예정가격 (부가세미포함)
		부지	건물 연면적		
여수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 (봉산동)	1,575㎡	928.9㎡ (1층) 471.65 (2층) 457.25	(1층) 특산품전시판매장 (2층) 전통음식판매식당	25,975,400원 (부지면적+건물) 시가표준액의 20/1000

마. 예정가격 : 금25,975,4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낙찰가격의 10%)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니, 필히 현장여건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제한입찰(지역제한-여수시)

-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및 지역(여수시) 제한이 있는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가. 제출일시 : 2026. 5. 7. 10:00부터 2026. 5. 20. 16:00까지

나. 제출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4. 낙찰자 선정(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5. 21.(목) 10:00

나. 개찰장소 : 여수시 관광과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주변여건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잘 파악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단체·법인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전통가공식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농·수·축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기타 지역 특산품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여수시에 등록된 단체 및 법인)

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사. 여수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아. 그 이외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자

7. 입찰참가 방법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이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되며, 공동참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라.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 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를 신한위탁, 하나위탁, 우리위탁입니다.

10. 보증금 등의 처리

-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청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

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을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 계좌에 보관됩니다.
-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그 입찰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되며(다만,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여수시가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의 결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추첨에 의할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입찰의 연기 및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현장 확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에 대한 유의사항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5.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방법

-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사용허가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후 낙찰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을 여수시(관광과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사용허가기간 종료일 후 60일까지로 하여 가입하고 보험증권 원본을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용허가 후 10일 이내에 허가조건의 내용 범위 내에서 이의 준수와 향후 경영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낙찰자는 허가조건 각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사용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응찰 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16. 낙찰자 제출서류

- 가. 사용허가 전 제출서류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 인감 증명서
 - 국세·지방세 등 완납증명서
- 나. 사용허가 후 제출서류(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행보증보험증권
 - 운영계획서

17. 기타 사항

-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하고 낙찰자의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니 비용·수익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목적은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지역특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 있으므로 여수시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으로 하여 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이어야 하여, 판매되는 제품은 우리시 특산품과 관광기념품으로 한정합니다.
- 다. 입찰안내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동시에 공고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온비드 공고내용을 우선합니다.
-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의 <나의 온비드>-<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바. 온비드 이용관련 문의처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및 온비드 홈페이지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광과 관광진흥팀(담당자 이희주 061-659-38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끝.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본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여수시 특산품전시 판매장을 사용·수익허가 함에 있어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일반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허가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2년)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25,975,400원(예정가격)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수탁자는 우리시에서 미리 납부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재산관리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허가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의 제3조, 제4조, 제6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6. 수탁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판매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수탁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책임) 수탁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우리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문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표시)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재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① 재산명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 ② 부지면적 : 1,575㎡, 건물 928.9㎡(1층 판매장, 2층 전통음식점)

제3조(책임과 의무)

-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 개시일 전에 수탁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수탁자가 져야 한다.
- ② 수탁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위탁 할 수 없다.(위반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 ⑥ 수탁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 ⑦ 수탁자는 우리시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 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 ① 수탁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취급)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시가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우리시에서 기본운영 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 ③ 영업장에서는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외의 물품, 제조업체·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 ④ 우리시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지라도 수탁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⑥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⑦ 유통기한 경과 품목의 취급 및 판매행위와 식품제조업 미허가업체 제품의 취급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⑧ 판매품이 질적으로 조잡하거나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⑨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 ⑩ 판매품목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시설 설치)

-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수탁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 ② 수탁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인테리어 등은 우리시의 승인 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비 등)

-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③ 내부시설 및 집기는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는 수탁자가 변상한다.
- ④ 건물 본체의 벽체, 방수, 전기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구조적인 수리는 우리시가 수선한다.
- ⑤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보수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 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종사원 친절교육 실시) 수탁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 (수탁자 본인 포함, 이하 같음)에게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인계인수) 여수시 특산물전시판매장 내 1층 특산물판매장 시설 기자재와 2층 전통음식점 운영에 따른 기자재 및 식기류는 수탁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우리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산정)

- ① 첫째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한다.
- ② 둘째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다.
※ 둘째년도 이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③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 ④ 다음년도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1개월 전에 징수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 개시 일전까지 선납부하여야 한다.
- ⑤ 갱신 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11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낙찰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피보험자를 “여수시(관광과장)”로 하여 사용허가일 10일 이내에 여수시(관광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보증금 귀속) 수탁자가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여수시로 귀속되며, 수탁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조(금지사항) 수탁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행정처분)

- ①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9조의 위반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 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 고
1	1 차 경 고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2	2 차 경 고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및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3	3 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5조(판매점 유지관리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 수탁자는 판매점 유지관리(전기시설 점검 등)로 인하여 영업상의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우리시는 수탁자에게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시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우리시는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의무)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8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해석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 3]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 205(봉산동 100-20번지)
 - 면 적 :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위탁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 ※ 붙임 1.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부
- 2. 법인(단체)현황 1부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①

여수시장 귀하

[붙임 4]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1. 전시판매장 위치 :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205(봉산동 100-20번지)
2. 운영대표자 :
3. 입주자 지정계획 :
4. 전시 및 판매품목 :
5. 판매방식 :
6. 판매제품의 수급 :
7. 제품의 판매가격 :
8. 전시판매장 개장 :
 - 개 장 일 :
 - 개장시간 :
9. 운영 및 판매원 배치 :
10. 사용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
11.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 구 성 :
 - 기 능 :
 - 회의 및 의견 :
12. 시설 및 물품 보존관리
 - 보험가입 :
 - 도난 등 안전관리 :
13. 기타 경상이익 및 결손금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태양광발전)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여 수 시 장

○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수리 내역

연번	구분	대표자	허가번호	발전소명	발전소 위치	용량(kW) (개시용량)	비고
1	양도인	농업회사법인 시드바이오테크 대표 정문호	전남 3675	시드바이오테크 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871	997.5 (988)	
	양수인	주식회사 다우스틸 대표 장길모		주식회사 다우스틸 태양광발전소			

끝.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여 수 시 장

1. 사업명

- 2026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2. 사업목적

-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입주민들의 행복하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3.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제2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기준)

4.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6. 5. 18.(월) ~ 2026. 5. 29.(금) / 12일간
- 접수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9시~18시), 등기우편 접수는 도착 2026. 05. 29. 17시 59분 까지 유효

※ 팩스,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5.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원조건
 - 단지 내 입주민의 야간 보행 및 방범 등 안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된 보안등(가로등)인 경우
 -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분리 설치되어 전기요금 고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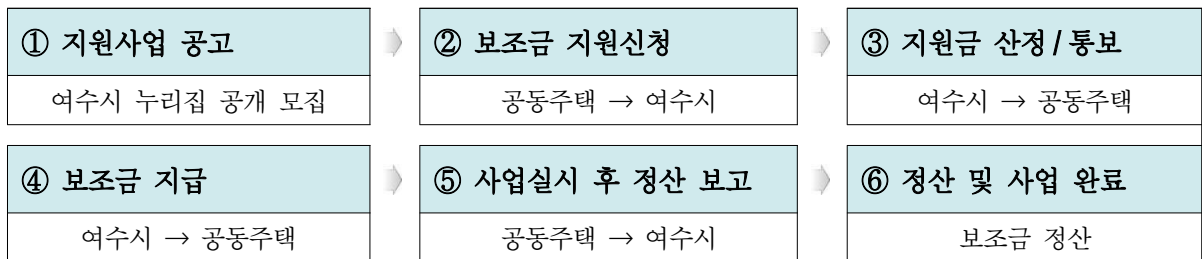
6. 지원 제외 대상

-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동전기로 별도 지원 중
- 주차장, 실내, 복도 등에 설치된 일반등 전기료
- 보안등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전기요금이 공동전기와 통합 고지되는 단지
- 보안등 전기료 연체금액

7. 지원내용

- 지원범위 : 2026년 보안등 전기료 청구분 중 4개월분(2026년 1월 ~ 4월)
- 지급결정 : 신청금액이 상반기 예산액 범위 초과 시 지원비율 조정 후 지급

8. 지원절차



9. 보조금 사용 방법(보조금 지급 후 30일 이내 정산마감)

- 보조금 지급 즉시 관리비 통장으로 이체(이자 발생 방지)
- 익월 관리비에서 일괄 차감 후 정산서 제출

10. 에너지 절약 안내

- 각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내 실정에 맞게 보안등(가로등)을 LED 절전형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ED 절전형 등기구 설치 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 검토 예정

1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신청

- * 입대의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관리주체가 신청
- * 입대의 없는 경우 : 대표자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 1)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 2) 청구서 및 송금의뢰서 1부. [서식2]
- 3)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 3]
-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서식 4]
- 5) 보안등 전용 월별(2026년 1~4월) 청구서 또는 고지서 사본 각 1부.
- 6) 보안등 설치사진 및 배치도 각 1부.
- 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부.
- 8)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2부. * ① 예금주: 입주자대표회의 ② 잔액 0원
- 9)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정산 시 제출서류

- 1) 정산서 1부. [서식5]
- 2) 관리비 부과 내역서 1부. * 보조금 차감 내용 표시
- 3)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 거래내역 및 잔액 확인(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4) 보조금 지급 및 정산(감액) 내용 게시한 공고문 및 실제 부착 사진 각 1부. * 입대의 직인 필수

* 모든 신청 서식은 원본 제출, 구비서류 사본은 페이지 마다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은 농협은행 또는 광주은행 통장만 사용 가능

1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제출된 서류의 작성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보조금 지급 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이자 포함) 조치 및 향후 3년간 해당 보조사업 지원 불가
- 접수 기간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수정, 보완 등 불가
- 이자 발생 시 사용 금지(정산 시 모두 반납)
- 하반기 보조금((2026년 5~10월분) 신청은 11월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84)로 문의

공동주택 보안등(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 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특히 보조금의 수령 및 집행 등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민간에 대한 보조금(경상 및 자본) 지원과 관련하여 재정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② 수집·이용·공개 항목 : 성명 ③ 보유기간 : 준영구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 건 민간보조사업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향후 지원 검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처리 동의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 및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2026년

월

일

동의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 5]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보조금 정산서

공동주택 현황

단 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 용 검 사 일	
동 수		세 대 수	
신 청 인		핸 드 폰 번 호	

집행 현황

지원금액(A)	실제 집행액(B)	집행잔액(A-B)

관리비 부과내역

구분	세대수	세대별 차감액(단위: 원)	총 차감액(단위: 원)
계			
___평형(m ²)			
___평형(m ²)			

위와 같이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을 집행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관리비 부과 내역서 1부.
2.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3. 보조금 지급 및 정산(감액) 내용 게시한 공고문 및 실제 부착 사진 각 1부.

2026. . .

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CCTV) 설치 (운영)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여 수 시 장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운영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구간 단속시행일자

- 위 치: 여수시 웅천동 포레나 입구
-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 시행일자: 2026. 6. 10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2026년 5월 11일 ~ 2026년 6월 9일 18:00, 30일간

4. 공고방법: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6년 5월 11일 ~ 2026년 6월 9일 18:00, 30일간

다. 제출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여수시 웅천동 포레나 입구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 2】 의견제출서 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용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3차)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용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자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5월 2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5. 11.
여수시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융자금 지원 규모

- 총모집금액 : 532,640천원(융자금 426,112천원, 자부담 106,528천원)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신 설	80억원이하	64억원이하	16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이하	40억원이하	10억원이하

□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자담 20%

II.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다만, 동아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다만, 신규로 허가 등을 받아 양식,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 다만, 전복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

Ⅲ.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 선정절차

-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용자지원규모 등 결정
- 사전 수요조사 신청자 우선순위 배정

□ 제출서류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 별지3호 서식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대출기관발급) - 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 확인서
 - 자부담 확보 증명
 - 사업 견적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추후 제출)

-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 사본
 -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증명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5호 서식
 -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 별지11호 서식
 -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
-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

IV.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5. 11. ~ 5. 29. (19일간)
- 신청방법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방문 신청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용자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용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용자금을 실행함. 단 용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따름.
2. 2026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별표2에 따라 신청 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3. 그물, 셀타 등 주된 양식시설의 부속품(기자재)만 구입 신청할 수 없음.
4. 관리선 건조사업의 경우, 양식장 관리선만 신청이 가능하며, 낚시어선, 통발, 자망 등 허가어선은 신청 할 수 없음. 사업완료 후 어선원부에 지원 내역이 기재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도, 양도가 불가
5. 양식어업 면허 초과, 이탈시설 및 양식 어업권 행사계약서상 영어조합법인이 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 불가
6. 전복양식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배정하며, 사업 신청량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전복가두리 신규제작 불가)
7.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 매매·임대 제한
 - (사후관리기간) 사업완료 후 용자대상자에 대한 용자금 상환 시까지
 -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22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
9. 최근 5년 내 정부지원사업의 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본 사업 지원받을 수 없음.
10.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 시 3년간 지원 제한
11. 해조류양식시설 및 전복양식시설에 따른 부표는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신청해야함.(견적서상 표시)
12. 본 사업 신청일 이전 어선발주 신청자는 제외됨.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바닥식		구획시설	
	허가	육상 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허가	육상양식 (양성 및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 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림스크린, 피쉬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자동전기설비 등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 배합기, 발전기 등	
관상어 양식시설 및 장비	신고	관상어양식업	-	건축물 및 전기·수도 설비, 수조, 여과장치, 자외선살균기, 전시·체험형 양식시설 등 관상어양식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 필요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1.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 별지3호 서식
2.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대출기관확인) - 별지 4호 서식
 - 금융거래 확인서
 - 자부담 확보 증명(통장 사본)
 - 사업 견적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예외)
 -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 사본
 - 육상해수양식 신축 및 수산종자생산업 증축 시 부지확보 증명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 별지5호 서식
4.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 별지11호 서식
5. 보조 및 융자 사업 이력서
(50백만원 이상 신청 시 1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

[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계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제(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총액	용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4.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천원)	비고
계					

5.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공사준공예정일
- 용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6. 제출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자부담 관련 서류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1.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2.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3.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취급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 등 대출 적격 여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부가 최종 결정됨을 확인하였고 동의한다.
2. 사업자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미착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사업자 선정 이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대출 기간 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 통합,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신고 등을 승계받아 변경된 사업자가 사업자금 승계를 받고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이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보조 및 용자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 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 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양식시설현대화사업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도운정 사무관 고성국 주무관 윤태연	044-200-5630 044-200-5635 044-200-5636

I. 사업개요

1. 목 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등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 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양식 시스템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개량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관상어산업법」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4. 성과목표 및 지표

- 양식어업인의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

5. 2026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원액		
		계	용자	자담
계	250	47,250	37,800	9,450
해면양식, 육상양식, 종자생산시설 및 관상어양식시설	200	37,800	30,240	7,560
내수면양식시설	50	9,450	7,560	1,890

※ 지원규모 : 해면:내수면=8:2, 지자체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 한정어업면허 포함
 -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21조에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허가(육상수조식, 육상축체식, 해상

- 축제식,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을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관상어산업법에 의한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득한 어업인 또는 단체**

- 제11조에 의한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득한 자

○ **개인 및 생산자단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양식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다만, 신규로 허가 등을 받아 양식, 종자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금 지원이 완료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복산업의 수급안정 및 전복가두리 신규면허 제한에 따라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 다만, 전복해상가두리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

3. 지원대상(자금용도)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 시설물 현황(별표 1)참고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의 경우 환급금을 제하고 신청하여야 함

4.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한도		
	총사업비	용자지원	본인부담
신 설	80억원이하	64억원이하	16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이하	40억원이하	10억원이하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권자인 경우 1 어가로 인정되어 최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5. 지원조건

- 지원형태: 용자80%, 자담 20%
- 지원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금리: 연 1.0%(고정금리)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자금지원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및 수협은행장에게 시달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용자금을 배정한다.(별지 1)
- 사업 계획의 수립·시달
 - 사업집행주체는 용자금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시달한다.
 - 주관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별지 2)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용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면허증·허가증·신고증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별지 11)를 함께 제출하여 주관기관에 사업을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026년 사업 신청자는 2026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적용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집행주체에 통보하고,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별지 11)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주관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융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이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고 이를 사업집행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 선정·변경 사항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총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신청서(별지 7)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용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
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의 80%를 용
자금으로 지급한다.
 - 용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은행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은행은 매월 용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
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와 관련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신
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부서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요구한다.
- 자금지원부서는 수협은행장에게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한다.

○ 대출실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기관(해양수산부)는 주관기관(시·군·구)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
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연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총괄기관(해양수산부)는 대출기한이 6월말까지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주관기관(시·군·구)의 요청을
받아 현지 확인·점검결과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연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대출기한이 8월말까지 2회 연장된 자금 중에 주관기관(시·군·구)의
요청을 받아 추가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및
사업총괄기관(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여 12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 승인하
고 통보한다.

* 필요한 경우 집행주체(시·도) 포함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용자금지원결과 보고
 - 수협은행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용자금 지원결과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별지 9)를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에게 보고한다.
 - 주관기관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사업집행주체에게 보고하고 사업집행주체는 이를 취합하여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IV.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관기관은 관리감독자로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사업자 선정후 3개월이내 사업 미착수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2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용자금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아래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을 제한한다.
- (사후관리기간) 사업완료 후 용자대상자에 대한 용자금 상환시까지

- * 변경된 사후관리 기간은 '22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시·도(사업집행주체)의 승인 없이 시설 등을 타인에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양도가 필요할 경우 시·도의 승인을 거치고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자금 승계) 합병·통합·사망 등으로 면허·허가·신고 등을 승계 받아 변경된 사업자가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의 승계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사업지침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대출취급 기관에 승계 적격 여부 통보하고 대출취급 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에 의한 최종 승계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조치한다.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 등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대체 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시·도(사업집행주체)의 승인 후 조치한다.
- (담보설정) 사후관리 기간 내 추가 다른 용도의 담보 설정을하려는 경우, 시·도(사업집행주체)의 승인 후 조치한다.

3. 사업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시·도지사)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사업수요조사(해양수산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 용자금 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 용자실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간 용자금 조정 배정
- 사업계획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년도 1월~선정 완료 시
 - * 사업중도 포기 발생, 3개월 이내 미착수 시 신규사업자 선정(수시)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년도 1월~계속
- 용자금 지원신청 및 용자금 지급 : 사업시행년도 1월~계속
- 사업자 선정현황 및 추가 사업수요 제출 : 사업시행년도 3월 * 필요시 수시
- 사업물량 재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사업시행년도 3월 * 필요시 수시

4. 기타사항

- 당해연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차년도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년도의 지침을 따른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맞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수하식	맞줄, 지주목, 부자, 닻 등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맞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허가	육상 해수양식	바닥식	구획시설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종자생산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맞줄식, 말목식, 뗏목식	맞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허가	육상양식 (양성 및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 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림스크린, 피쉬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자동전기설비 등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 배합기, 발전기 등	
관상어 양식시설 및 장비	신고	관상어양식업	- 건축물 및 전기·수도 설비, 수조, 여과장치, 자외선살균기, 전시·체험형 양식시설 등 관상어양식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 필요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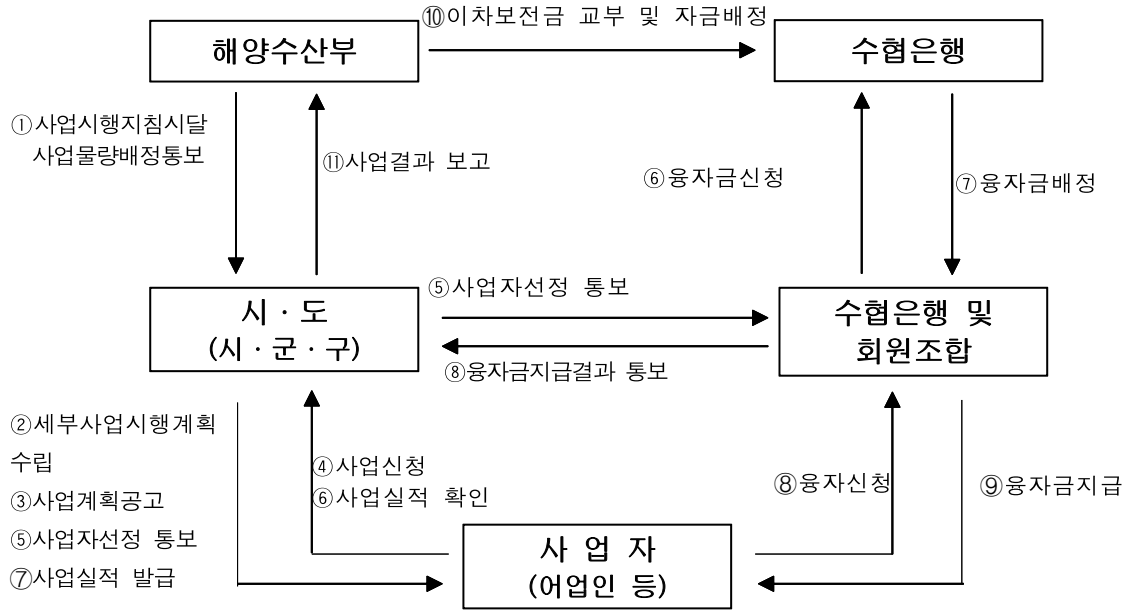
[별표 2]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로 영향은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품목 생산자 ○ 수출주력 품목 생산자
해면양식, 육상양식, 종자생산시설 및 관상어양식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수온 대응 취수관 개선 양식장 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 3.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4.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한 자 5.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참여자 7.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수산물 자조금 납부완료자* <p>* 의무자조금 품목(8종)을 생산하는 양식어가의 경우에 한하며,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p>※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p>
내수면양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2.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3. 수산통계 모니터링 참여자 4.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수산물 자조금 납부완료자* <p>* 의무자조금 품목(8종)을 생산하는 양식어가의 경우에 한하며,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p>※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p>

[별표 3]

사업 추진체계



[별지 2]

(시·군·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

1.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지원내용
- 용자금 지원규모
- 용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2.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

3.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

4.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5. 기타 유의사항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계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제(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4.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천원)	비고
계					

5.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공사준공예정일
- 용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6. 제출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자부담 관련 서류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유의사항】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시점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금융기관 여신 제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가능 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유	무	예외적용 사유
1.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2.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3.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5]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 면적	m ²	양식방법	
	수면적	m ²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100%)	융자신청액 (80%)	자부담 (20%)	비 고
<p>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첨부서류 : 1. 양식업 관련 면허증·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사업자선정용신용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p> <p>○○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연체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주사업장 권리침해 등 보증제한사항 없이 보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별지 6]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 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 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100%)	융자금 (80%)	자부담 (20%)		

4.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신청서

양식어가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 면적	m ²	양식방법
	수면적	m ²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용자신청액	자부담
신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수협은행 () 지점장 귀하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

1. 신청자의 주소 및 명칭

2. 사업명 :

3. 사업시행기간 :

4. 보전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나. 내용

다. 이차보전액

5. 보전금 교부신청액(A-B)

가. 이차보전산출총액(A) :

나. 기보전액(B) :

위와 같이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 중 운용한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확정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액 계산내역서
2. 계좌이체 지정 의뢰서
3.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액 총괄표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

수협은행 은행장 000

[별지 9]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용자지원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분기)

1. 용자지원 현황

(단위 : %, 천원)

시·도	시군구	양 식 어가명	성명	용자금 (A)	용자지원내역			
					실 용자금 (B)	용자 실행율 (B/A)	최초 용자일 (년월일)	용 자 만기일 (년월일)
합계								
	소계							

2. 이차보전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0000년 예산 (A)	계 (B+C)	기집행액 (B)	해당분기 (C)	집행율 ((B+C)/A*100)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결과(분기)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총사업비			실용자금
			계 (A+B)	용자금 (80%) (A)	자부담 (20%) (B)	
	해면					
	내수면					

2. 사업대상자별 지원실적

(단위 : %, 천원)

사군구	양 식 어 가 명	성 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해 면· 내 수 면	어 업 종 류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용자지원		최초 용자일 (년월일)	용자 만기일 (년월일)
						계 (A+B)	용자금 (80%) (A)	자부담 (20%) (B)	실 용자금 (C)	실 용자율 (C/A)		
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어업종류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인허가사항 작성
- 사업내용 : 양식대상 수생생물을 포함, 00양식시설 신축 또는 00양식시설 개보수 또는 00장비 교체(도입)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양식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취급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 등 대출 적격 여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부가 최종 결정됨을 확인하였고 동의한다.
2. 사업자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미착수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사업자 선정 이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대출 기간 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지원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 통합,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신고 등을 승계받아 변경된 사업자가 사업자금 승계를 받고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이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511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 합니다.

2026. 5. 11.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511번지
2. 도로면적 : 22㎡
3. 도로길이 : 22m
4. 도 로 폭 : 1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돌산읍 군내리	511	대	441	22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6년 돌산읍 해수욕장 주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돌산읍 해수욕장 주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채용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돌 산 읍 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2명

- 응시번호 : 무술목 - 1, 방죽포 - 1

2 신규채용 등록

- 등록일시 : 2026. 5. 15.(금) 18:00 까지
- 등 록 처 : 돌산읍사무소 개발팀(돌산읍 돌산로 1253-6)

3 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에 차질 없이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돌산읍(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659-1030)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8.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주시 연등8길 19	20260607	건축물폐지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연등동 720-6	전라남도 여주시 연등8길 19	20260608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정면 여자리 729-3	전라남도 여주시 여자대동길 29-16	20260608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대포리 502	전라남도 여주시 장전길 84-77	20260608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웅천동 1701	전라남도 여주시 예들마루로 3	20260608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돌산읍 서덕리 719	전라남도 여주시 승월길 47	20260608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호명동 1104-1	전라남도 여주시 호명3길 30	20260608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을 고려	